

코로나19 사태로 비추어 본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eterinary Telemedicine for the Companion Animal in the light of COVID-19

유성희* · 이진홍**

Yoo, Seong-Hee · Lee, Jin-Ho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Ⅲ. 외국에서의 반려동물 원격진료 |
| Ⅱ. 반려동물 원격진료에 대한 국내
현황 | Ⅳ. 도입 가능성 검토 |
| | Ⅴ. 결 론 |

<국문초록>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미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의 반려견에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반려동물을 동

* 주저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반하여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과 겹쳐 반려견에게도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자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기보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진료상담을 하는 등 차선책을 찾는 방식으로 그들의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적인 진단에 기반한 진료를 받을 수는 없고 일반적인 진료상담 서비스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법상 동물의 원격진료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 IT 서비스를 활용한 진료는 보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원격진료를 시도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 원격진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적으로 수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물병원 방문을 통하여 직접적인 진단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진단을 내렸던 수의사와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도하는 방안, 그리고 해당 동물 및 의뢰인이 격오지에 있어 상시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료체제로 입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대형 동물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쏠리는 현상을 대비하여 시행 초기부터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 제 어

코로나19, 전염병, 반려동물, 원격진료, 비대면

I. 서 론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으며,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대면이라는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며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간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을 피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이 비대면에 기반한 예방수칙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람간의 감염 외에도 반려동물의 감염 가능성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미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의 반려견이 양성 반응¹⁾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과 겹쳐 반려견에게도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사람이든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출이든 외출 자체가 어렵거니와 병원 출입이나 진료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어려워 비대면을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인체에 대한 원격진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시도해보자는 의견²⁾도 제기된 바 있어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수의사의 진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도입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가축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시도되었지만 네트워크 장비나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호지부지 되곤 하였다. 기존에 얘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눈부신 기술의 발달로 통신장비, 고화질의 영상장비 등을 통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해소된 듯하다.³⁾ 그러나 이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격적 문제로 인해 현실화·상용화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수의사협회의 입장, 국민의 입장 간의 의견 조율 및 원격진료 시스템을 현실화하기까지는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와 이후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반려동물 원격

1) 60th 의사신문, “반려동물 코로나 첫 확진 사례 나와…동물도 사람처럼 격리해야”, 2020.03.06.일자 기사 참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85>
2) 한국경제, “반려동물 원격의료 先도입” 제안에, 윤종원 “참신한 아이디어…검토하겠다”, 2019.05.28.일자 기사 참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52832681>
3) 축산경제신문, ‘가축 원격진료’ 현실화 기대, 2014.09.26.일자 기사 참고,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41>

진료의 제한적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반려동물 원격진료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III장에서 외국에서의 반려동물 원격진료 현황을 검토하여 IV장에서 국내 도입 가능성과 제한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반려동물 원격진료에 대한 국내 현황

1. 반려동물 및 원격진료의 개념

(1) 반려동물의 개념

반려동물이란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⁴⁾

반려동물의 법률적 정의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는 다르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척추동물이다.⁵⁾

최근에는 생명의 개념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난감 등의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동물’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⁶⁾

(2) 반려동물의 지위

마하트마 간디에 따르면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

4)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알기, <http://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검색일: 2020.06.01.

5) 정삼철, 충북지역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전략 연구, 충북연구원 기본과제 2017-06, 2017, 6쪽.

6) 이진홍·장교식,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44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41쪽

물이 받는 대우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의 수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수준을 평가하기도 한다.⁷⁾

현재 법률상 반려동물은 권리(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의 규정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규정에서 반려동물은 재산 및 물건에 해당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본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치상의 경우 일반의 물건과 달리 소유자가 그 반려동물과의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소유하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에서 반려동물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다.⁸⁾

또한 지난 5월 진돗개 강아지 수간⁹⁾ 사례, 지난 6월 고양이 등 2마리를 잔혹하게 살해¹⁰⁾ 사례, 지난 7월 고양이 학대 살해¹¹⁾ 사례, 지난 10월 반려견 잔혹 살해¹²⁾ 사례 등을 통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시키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3) 원격진료의 개념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에서 진료는 진찰과 치료를 한데 아울러서 일컫는 용어

7)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60권, 2019, 360쪽.
8) 서울중앙지법 2001.7.14.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연구 제16권 제1호, 2016, 47쪽.
9) 강아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의 해를 입고 그 날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 전해지고 있다. 조선닷컴, 생후 3개월 진돗개 길거리서 수간한 20대男, 2019.05.20.일자 기사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4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0) TV CHOSUN, “이를 연속 고양이 살해...동물학대법 또 법정구속”, 2020.01.07.일자 기사 참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90121.html
11) 연합뉴스TV,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2심도 징역 6개월, 2020.02.13.일자 기사 참고, <https://www.yonhapnewsstv.co.kr/news/MYH20200213022200038?did=1825m>
12) MBC NEWS,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잔혹’하게...”이제는 실형“, 2020.01.22.일자 기사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3499_32524.html

이며, 의료는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지 등을 일컫는 용어로 진료의 개념보다는 의료의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¹³⁾이다.

원격진료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¹⁴⁾으로 정의된다.

(4) 해양원격응급의료의 개념

해양원격응급의료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해양응급의료지원센터 지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함정의 응급구조사 또는 해양응급의료시스템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¹⁵⁾

2. 국내 원격진료 현황

동물병원의 원격진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SNS 등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해주는 동물병원이 있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동물병원도 있다. 충남의 A 동물병원은 반려인과 SNS를 통해 원격진료를 한 사례가 공개됐다. 동물병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난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것은 원격진료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의 K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담으로 처방하고 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원격진료는 수의사법 위반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

13)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1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며 용어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15)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해양경찰청훈령 제130호, 2019. 7. 10,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1호 해양원격응급의료.

유성희·이진홍: 코로나19 사태로 비추어 본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한 상담과 진료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원격진료는 이미 최첨단 IT 장비로 현실화 되고 있다.¹⁶⁾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시간으로 수의사와 반려동물 상태를 상담하도록 돕는다. 앱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질문을 증상 사진과 함께 문의 하면 전문가인 수의사가 1:1 채팅으로 무료로 상담해준다.

질문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의 위치 주변의 제휴 동물병원 수의사로부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문가인 수의사로부터의 조언을 통해, 무심코 넘기기 쉬운 반려동물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고, 동물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벼운 증상의 경우 상담을 통해 내원여부가 필요한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3. 국내법 및 관련 판례 검토

(1) 국내법 검토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시설 기준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수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장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 개설 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 조제, 투약 등을 해야 함으로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불가능하다.¹⁷⁾ 화상이나 전화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해 수의사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¹⁸⁾

또한 원격의료를 한다 한들 처치에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상당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의사는 동물병원 진료과정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처방전을 발급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동물의 원격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에 있는 자가진료 철폐

16) 데일리개원, “반려동물 원격진료는 해도 괜찮아?”, 2019.06.04일자 기사 참고, “반려동물 원격진료는 해도 괜찮아?”,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2>.

17) 데일리개원, “반려동물 원격진료는 해도 괜찮아?”, 2019.06.04일자 기사 참고, “반려동물 원격진료는 해도 괜찮아?”,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2>.

18)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관련 판례 검토

의사 A씨는 환자 B씨를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여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대면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루어졌다며,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화로 충분한 의사의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을 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자 B씨를 만난적이 없고, 통화할 때도 B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¹⁹⁾

III. 외국에서의 반려동물 원격진료

동물 원격진료 서비스는 북미 전역, 호주, 스웨덴 등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동물 원격진료를 시도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 미국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 알래스카, 코네티컷 등 3개 주에서만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3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의

19) 메드월드뉴스, “‘비대면 진료’ 불법 ?비대면·원격의료 추진에 새 변수?“, 2020.05.28일자 기사 참고,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17>.

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동물을 진단, 처방하거나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유효한 VCPR을 요구한다. VCPR은 「미국수의사회 모델 수의료법」²⁰⁾(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Model Veterinary Practice Act(MVPA))에 근거한 수의사-의뢰인-환자의 관계(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 요건으로서, 반려동물과 산업동물과 관련하여 수의사가 진료를 위해 동물을 신체적으로 직접 검사하거나 동물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는 특정 요건 규정을 말한다.²¹⁾ 해당 VCPR은 수의사, 의뢰인(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동물 환자 간의 전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방 VCPR 정의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환자를 신체적으로 검사하고/하거나 동물이 보관된 장소를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었다.²²⁾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VCPR이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격진료의 범위가 다르다. VCPR이 확립된 경우에는 수의사가 다양한 원격진료 서비스 모델을 이용할 수 있고, 수의학적 진료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환자에 대한 가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VCPR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사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일반적인 조언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환자의 진단, 치료를 할 수 없다.²³⁾

한편, 지난 3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대면진료 없이 동물의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동물 원격진료(Veterinary Telemedicine)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²⁴⁾ 특히 직접적인 접촉 및 코로나19의 확산을 제한하면서 수의사가 추

20) 미국수의사회협회는 미국 각 주에서 수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하기 위한 모델로서 2013년 1월에 동법을 발표하였다.

21) VCPR은 ① 수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관한 임상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의뢰인은 수의사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할 것, ② 수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또는 예비 진단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환자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환자에 대한 적시 검사, 방문에 따른 것을 의미), ③ 수의사가 후속 조치를 위해 쉽게 이용가능하거나 응급치료, 지속적인 케어 및 치료 등을 준비할 것, ④ 환자 기록에 대한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하다(AVMA 웹사이트 참고, <https://www.avma.org/resources-tools/practice-management/telehealth-telemedicine-veterinary-practice/telehealth-and-vcpr>).

22) FDA 웹사이트 참고,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helps-facilitate-veterinary-telemedicine-during-pandemic>>.

23) AVMA, “Telehealth and the VCPR” 참고 <<https://www.avma.org/resources-tools/practice-management/telehealth-telemedicine-veterinary-practice/telehealth-and-vcpr>>.

24) 돼지와 사람, 미국, 코로나19로 수의 원격진료 일시허용...확산 방지 차원, 2020.04.03.일자 기사 참고, <https://www.pigpeople.net/mobile/article.html?no=8109>.

가적인 라벨 방식(extra-label)으로 약물을 처방하거나 동물과의 직접적인 검사 없이 '동물용 사료지침'(Veterinary Feed Directive, VFD)에 따라 약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한다.²⁵⁾

FDA가 일시적으로 허용한 특정한 VCPR 요건은 연방정부 차원의 요건이므로 수의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료분야에 있는 개별 주(州)에서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몇몇 주에서도 환자와 의사간에 물리적인 접촉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²⁶⁾

2. 호주

수의사-의뢰인 간 원격 진료 상담을 하는 수의사는 환자가 거주하는 주(州) 또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도록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현재 등록이 해당 관할 구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동물이 다른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곳 모두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원격 심사(긴급) 능력 또는 인간 대면 접촉이 바람직하지 않은 응급 건강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수의사-의뢰인-환자 관계가 확립되어야만이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반면에, 수의사 대 수의사 상담은 원격진료 관련 법정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별도의 호주 수의사협회(Australian Veterinary Association, AVA) 정책에 의해 보호된다. 호주 수의사협회의 경우, 별도의 주(州) 수의학위원회(veterinary boards)가 존재하고 별도로 국가 등록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와 '수의사-의뢰인-환자의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주(州) 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²⁷⁾

25) Veterinary Practice News, “FDA loosens telemedicine regulations amid COVID-19 pandemic”, 2020.3.25. 참고 <<https://www.veterinarypracticenews.com/fda-loosens-telemedicine-regulations-amid-pandemic/>>.

26) Patricia Wuest, “Telemedicine Emerges as a Care Option for Veterinary Patients”, TVP 웹사이트 참고, 2020.6.7.방문 <<https://todaysveterinarypractice.com/telemedicine-emerges-as-a-care-option-for-veterinary-patients/>>.

27) AVA, “Telemedicine practice” 참고 <<https://www.ava.com.au/policy-advocacy/policies/professional-practices-for-veterinarians/telemedicine-practice/>>.

3. 스웨덴

스웨덴의 ‘스웨덴 수의사협회’(Swedish Veterinary Association)는 유럽 38개국의 수의사 조직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조직인 ‘유럽 수의사 연합회’(The Federation of Veterinarians of Europe, FVE)에 속한다. 이에 따라 ‘유럽 수의사 연합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사법(Veterinary Act)에 근거하여 검사 및 진단 없이도 치료를 권장하거나 외과적 개입을 수행할 수 없고 수의학적 처방 전도 진단 없이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²⁸⁾

다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동물 원격의료 회사가 전화나 비디오를 통해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4.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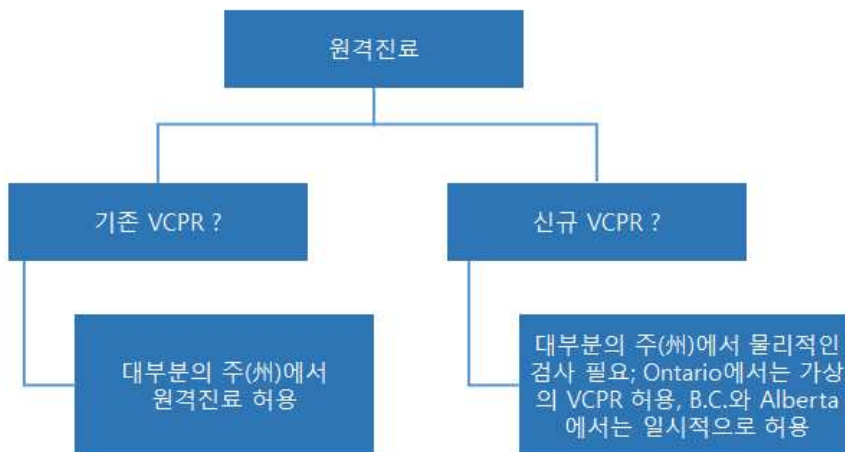
캐나다에서의 동물 원격진료는 현재 수의학적 치료법을 대체하지 않지만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수의사법(Veterinarians Act)에 따라 수의사와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유효한 VCPR(수의사-의뢰인-환자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사전 동의와 같은 다른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효한 VCPR은 수의사가 의뢰인의 동물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뢰인이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동의한 것을 의미하며, 유효한 VCPR은 수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고 동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적시에 동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효한 VCPR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신체적 검사(또는 측사 또는 양봉장 현장 방문)를 완료하여야 한다. VCPR이 확립되면 일반적으로 무엇이 해당 동물에게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하여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원격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온타리오 주, 일시적으로 BC주 및 앨버타 주)에서는 원격 진료를 사용하여 VCPR을 사실상 설정할 수 있다.

원격진료 및 유효한 VCPR 설정과 관련하여 지방 면허 기관²⁹⁾의 규정을 준

28) FVE, “European Veterinary Code of Conduct –Veterinarians: caring for animals and people-”, 2019 참고 <https://www.fve.org/cms/wp-content/uploads/FVE_Code_of_Conduct_2019_R1_WEB.pdf>.

29) 예컨대, ABVMA(Alberta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VBC(College of Veterinaria

수하는 것이 관할 지역마다 다르다.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가상 VCPR을 임시로 만들 수 있으며, 이 가상 VCPR은 공인 수의학 시설(병원, 진료소)을 통하여 실시한다.³⁰⁾



[그림 1] 캐나다의 동물 원격진료와 VCPR 구조도³¹⁾

다만, 캐나다에서의 원격진료는 수의학적 대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의 보완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가 극복되지 않는 한 신체적 검사 및/또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를 존중하면서 원격진료를 요청·수행해야 한다.

IV. 도입 가능성 검토

1. 선행적인 진단 요건의 마련

동물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행위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

ns of British Columbia), MVMA(Manitoba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등이 있다.

30) CVMA(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eterinary Telemedicine” 참고 <<https://www.canadianveterinarians.net/documents/cvma-veterinary-telemedicine-guidelines>>.

31) CVMA(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eterinary Telemedicine” <<https://www.canadianveterinarians.net/documents/cvma-veterinary-telemedicine-guidelines>>.

요가 있다. 원격진료를 하는 수의사와 동물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뿐더러 동물 양육자의 설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정확하다. 기기를 이용하여 건강 데이터를 수의사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기기를 통해 수의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제한적인 정보이며, 기기가 고장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오진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오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사례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 선행적으로 수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물병원 방문을 통하여 직접적인 진단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진단을 내렸던 수의사와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기존 자신의 병원 환자인 경우 충분한 자료를 수렴한 이후에 진단 및 처방하여 약을 보내주는 사례가 있었다.³²⁾ 국내법상 규제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원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시행해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격오지 등 지역의 제한

사람 대상 원격진료는 2009년부터 산간 오지, 섬 지역 등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기 곤란한 격오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격오지 거주자들은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원격진료가 허용된 것이다. 격오지 거주자들의 원격진료 필요성은 비단 사람 대상만의 일은 아니다. 키우고 있는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하지만, 지리적·시간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진료는 동물 대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역적 범위

32) 테일리개원, “동물병원 원격진료 이미 시작됐다?”, 2014.11.28.일자 기사 참고,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

안에서는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로서 사람 대상 원격진료가 가능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격오지로 지역을 제한하여 실증특례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다.³³⁾ 강원도 규제자유특구가 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추진된 데에는 격오지 환자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기존의 부처 시범사업에서 시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재택에서 직접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증특례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 역시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하여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 교통시설이 발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니즈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실증특례를 통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의 가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경우, 동물 대상 원격진료 또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동물의료체계의 정비

일부 동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동물의료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원격진료의 도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동물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33) 강원도민일보, “격오지 환자 집에서 상담·진단… 원격의료 길 열렸다”, 2019.07.25.일자 기사 참고,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79617>.

다.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원격조제·배송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온라인 의약품 배송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에서는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앴다.³⁴⁾ 국내에서 또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약품 원격조제·배송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약품 관련 규제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원격진료 행위를 통해 처방되는 의약품을 의뢰인에게 조제하거나 배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동물병원 개원가에 쏠림현상 방지방안 마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도입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중 하나는 환자쏠림 현상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급여 적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병원이 의원급, 병원급으로 구분되고 1차, 2차, 3차 의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진단·치료 등 장비가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1차, 2차 의원보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담당하는 3차 대형 병원으로까지 원격진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환자의 쏠림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3단계의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이고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원격진료 의뢰로 인하여 1,2차 의원을 중심으로 한 피해는 개원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입게 될 피해는 더 클 수 있다.³⁵⁾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원격진료를 실증특례 사업으로 지정할 당시,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3차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쏠림현상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사업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

34) 조선일보, “일본은 의사가 처방한 약 택배로 받고, 중국은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 1억명”, 2018.08.02.일자 기사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2/2018080200216.html.

35) 의사신문, “더 뜨거워진 감자 원격의료…개원가에서 고개드는 현실론”, 2020.05.07.일자 기사 참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37>.

로 한 모니터링·내원안내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방지방안을 마련한 덕분에 원격진료 실증사업이 지정되었다.³⁶⁾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동물병원 개원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경우 진료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구축해놓은 일부 대형 동물병원에만 진료 의뢰가 들어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동물병원에는 진료의뢰가 적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원격진료의 경험을 토대로 일부 대형 동물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쏠리는 경우에 대한 방지 방안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개원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대책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간단한 진단 및 치료의 경우에는 소형 동물병원 위주로 의뢰하는 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병, 상처 등에 대해서는 소형 동물병원이 대형 동물병원 의뢰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V. 결 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면접촉을 피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반려동물에까지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동물병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의사에게 반려동물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진료상담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반대로 원격진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의사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로 인해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의 원격진료 수요는 날이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속도를 맞춰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기존에 수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물병원 방

36)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강원도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2019.07.24.일자 기사 참고, <https://www.medigatenews.com/news/1242992937>.

유성희 · 이진홍: 코로나19 사태로 비추어 본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문을 통하여 직접적인 진단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진단을 내렸던 수의사와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도하거나 격오지 등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하여 시도해볼 여지는 있다. 이와 동시에, 의약품 관련 규제 정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격진료의 경험을 토대로 일부 대형 동물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쏠리는 경우에 대한 방지 방안과 동물병원 개원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0. 6. 10	심사일: 2020. 6. 12	게재확정일: 2020. 6. 29
------------------	------------------	--------------------

참고문헌

-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
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연구 제16권 제1호, 2016
- 이진홍·장교식,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44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정삼철, 충북지역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전략 연구, 충북연구원 기본과제
2017-06, 2017
-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60권,
2019
- 강원도민일보, “격오지 환자 집에서 상담·진단… 원격의료 길 열렸다”, 2019.0
7.25.일자 기사 참고,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79617>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알기, <http://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검색일: 2020.06.01.
- 데일리개원, “동물병원 원격진료 이미 시작됐다?”, 2014.11.28.일자 기사 참고,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
- 메드월드뉴스, “‘비대면 진료’ 불법 ?비대면.원격의료 추진에 새 변수?”, 2020.0
5.28일자 기사 참고,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17>
-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강원도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2019.07.24.일자 기사 참고, <https://www.medigatenews.com/news/1242992937>
- 연합뉴스TV,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2심도 징역 6개월, 2020.02.13.일자 기사
참고,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13022200038?did=1825m>
- 의사신문, “더 뜨거워진 감자 원격의료…개원가에서 고개드는 현실론”, 2020.0
5.07.일자 기사 참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37>
- 의협신문, 의협은 반대하는데, 병협은 “비대면 진료 원칙상 찬성”, 2020.06.04.

유성희 · 이진홍: 코로나19 사태로 비추어 본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일자 기사 참고,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68>

조선닷컴, 생후 3개월 진돗개 길거리서 수간한 20대男, 2019.05.20.일자 기사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4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일본은 의사가 처방한 약 택배로 받고, 중국은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 1억명”, 2018.08.02.일자 기사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2/2018080200216.html

축산경제신문, ‘가축 원격진료’ 현실화 기대, 2014.09.26.일자 기사 참고,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41>

한국경제, “반려동물 원격의료 先도입” 제안에, 윤종원 “참신한 아이디어…검토하겠다”, 2019.05.28.일자 기사 참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52832681>

60th 의사신문, “반려동물 코로나 첫 확진 사례 나와…동물도 사람처럼 격리해야”, 2020.03.06.일자 기사 참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85>

MBC NEWS,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잔혹’하게...“이제는 실형””, 2020.01.22.일자 기사 참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3499_32524.html

TV CHOSUN, “이틀 연속 고양이 살해...동물학대법 또 법정구속”, 2020.01.07.일자 기사 참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90121.html

AVA, “Telemedicine practice” 참고 <<https://www.ava.com.au/policy-advocacy/policies/professional-practices-for-veterinarians/telemedicine-practice/>>

AVMA 웹사이트 참고, <https://www.avma.org/resources-tools/practice-management/telehealth-telemedicine-veterinary-practice/telehealth-and-vcpr>

CVMA(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eterinary Telemedicine” 참고 <<https://www.canadianveterinarians.net/documents/cvma-v>

eterinary-telemedicine-guidelines>

FDA 웹사이트 참고,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helps-facilitate-veterinary-telemedicine-during-pandemic>>

FVE, “European Veterinary Code of Conduct –Veterinarians: caring for animals and people-”, 2019 참고 <https://www.fve.org/cms/wp-content/uploads/FVE_Code_of_Conduct_2019_R1_WEB.pdf>

Patricia Wuest, “Telemedicine Emerges as a Care Option for Veterinary Patients”, TVP 웹사이트 참고, 2020.6.7.방문 <<https://todaysveterinarypractice.com/telemedicine-emerges-as-a-care-option-for-veterinary-patients/>>

Veterinary Practice News, “FDA loosens telemedicine regulations amid COVID-19 pandemic”, 2020.3.25. 참고 <<https://www.veterinarypracticenews.com/fda-loosens-telemedicine-regulations-amid-pandemic/>>

[ABSTRACT]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eterinary Telemedicine for the Companion Animal in the light of COVID-19

Yoo, Seong-Hee* · Lee, Jin-Hong**

The spread of COVID-19 virus has raised the possibility that companion animals can also get infected. Indeed, a small number of companion animals have been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the virus that causes COVID-19 worldwide and companion animals' owners have concerned for the safety of their companion animals. As it is difficult to go out with companion animals, various IT services considering the animal rights to health emerged, and people using platforms such as medical consultation through smart phone applications are also increasing. However, there is a limit in that it is only a consultation service for pets and is not an individual diagnosis. This is because the domestic law does not allow animal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remote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veterinary telemedicine in order to protect the implementation of animals rights to health and keep pace with global trends. Only in the case of a veterinarian's direct visit or a direct diagnosis through a visit to an veterinary clinic before, limited remote treatment with the veterinarian who made the diagnosis may make an attempt. In addition, it is also possible to conduct veterinary medicine within a limited range only in areas where the animals and clients are in remote areas and have difficulty visiting at all times. Furtherm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as a medical system that veterinarians can prescribe medicines used for animal treatment, and it

* Lead Autho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Researcher. Ph.D. in Law

** Corresponding Author, Konkuk University Police Science Professor. Ph.D. in Law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ventive measure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for a scenario that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is concentrated in some large veterinary clinics.

Key Words

COVID-19, Infections Diseases, Companion Animal, Telemedicine, Untact